

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  
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박승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07. .  
발 의 자 : 박승희·구재용  
최석정 의원  
(찬성자 : 20 인)

## 1. 주 문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『SK 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함.

## 2. 제안이유

-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13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(PX) 제조시설과 연간 50만 톤 규모의 벤젠 생산 시설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, 현재까지 주거 지역과의 분리를 위한 차단녹지 설치 등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조차 없이 공장증설 및 준공을 강행하였음.
- SK인천석유화학 주변에는 신석초등학교와 신광 및 동남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, 화재나 폭발사고 발생 시 위험지역 800m 안에는 신현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있으며, 청라국제도시와도 근거리 이고, 서구주민 50만 명 중에 절반이 직·간접 피해 영향권 안에 있어 항상 서구 주민들은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환경피해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.

- 이로 인해 서구지역에서는 공장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, 심지어 공장 가동 반대운동을 벌여온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이달 말이 납기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해 납세 거부 움직임과 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.
- SK인천석유화학과 인천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보다 나은 환경과 자녀교육을 위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고, 부동산은 실거래 가치 하락으로 경제적 손실 등 지역경제가 파탄직전에 있어 서구주민들의 안전권, 환경권, 재산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.
- 또한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승인 인·허가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달라진 게 전혀 없으며, 오히려 시민들은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및 도시계획·재난·안전·보건·환경 분야 등 직·간접적인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, 산업경제위원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.

### 3.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6개월
  - ※ 단,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가능
- 구성인원 : 10인 이내
- 활동범위
  - 공장증설에 따른 도시계획 등 인·허가 절차의 적정성
  -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·안전사고 방지 대책
  - 악취, 소음, 빛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
  -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방안
  -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해소 대책 등

#### 4. 세부활동계획

- 특별위원회에서 수립·의결

#### 5. 관련규정

- 지방자치법 제5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

# 관련법령 발췌사항

## 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□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0조(특별위원회) ①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안,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
2.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

3.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

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, 위원 정수,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,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⑤ 영 제56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(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)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